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6. 25.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3. 6. 22
- 다. 회부일자 : 93. 6. 22
- 라. 상정일자 : 93. 6.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등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5급의 경우 별표 분류번호)이 구세과세면제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토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현행 조례에는 상이등급 별첨 분류번호 2급~5급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조례에는 별첨 분류번호 상이등급 3~5급이 적용되도록 함(별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개정은 제1조 목적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대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상에는 상이급수 1급은 당연히 구세가 면제되고 2급 내지 5급 중 별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면제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상이급수 1, 2급 모두를 당연 면제시키고 3급 내지 5급중 별표 분류번호 해당자에 한하여 구세과세면제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 응분의 예우를 도모해 주는 견지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개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 표]

(현 행)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급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
6 급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7, 49, 50,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개정안)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92, 505
6 급 (복 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